

대구광역시달서구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5. 3. 11.

기획재경위원회

1. 심사경과

- 안 건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
- 발 의 자: 박종길 의원 외 5명(정순옥, 이영빈, 김정희, 도하석, 남현주)
- 발의일자: 2025. 2. 26.(수)
- 회부일자: 2025. 2. 26.(수)
- 상정 및 의결: 제31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2025. 3. 11.)

2. 제안이유

-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일상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안 제4조)
- 지원사업(안 제5조)
-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자문위원회(안 제6조)
- 업무의 위탁(안 제7조)
-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

4. 참고사항(관계법령 등)

- 관계법령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조, 제50조
 -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46조
- 비용추계서: 비대상
- 입법예고(2025. 2. 26. ~ 3. 9.) 결과: 의견 없음

5.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 본 제정조례안은 디지털 정보화 시대에 구민이 다양한 디지털 정보에 대한 올바른 분석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 내용은
 - 안 제2조 및 안 제3조는 용어 정의와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4조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며,
 - 안 제5조 및 안 제7조는 교육 자료 개발, 교육 전문강사 양성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 안 제6조는 자문에 응하기 위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고,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기능이 유사한 스마트도시위원회가 대신 하도록 명시하였음.
- 본 제정조례안은 급속도로 변화하는 디지털 대전환의 시기에 넘쳐나는 디지털 정보 속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선별하고 활용하기 위해 비판적 이해력을 키우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구민에 대한 현실성 있는 교육 지원이라고 판단되며,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등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6. 질의·답변 및 토론 요지: 특이사항 없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